

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2.06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국민화합 도모, 세계가 함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 기반강화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,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 선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에 조성하고자
-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

2. 일부변경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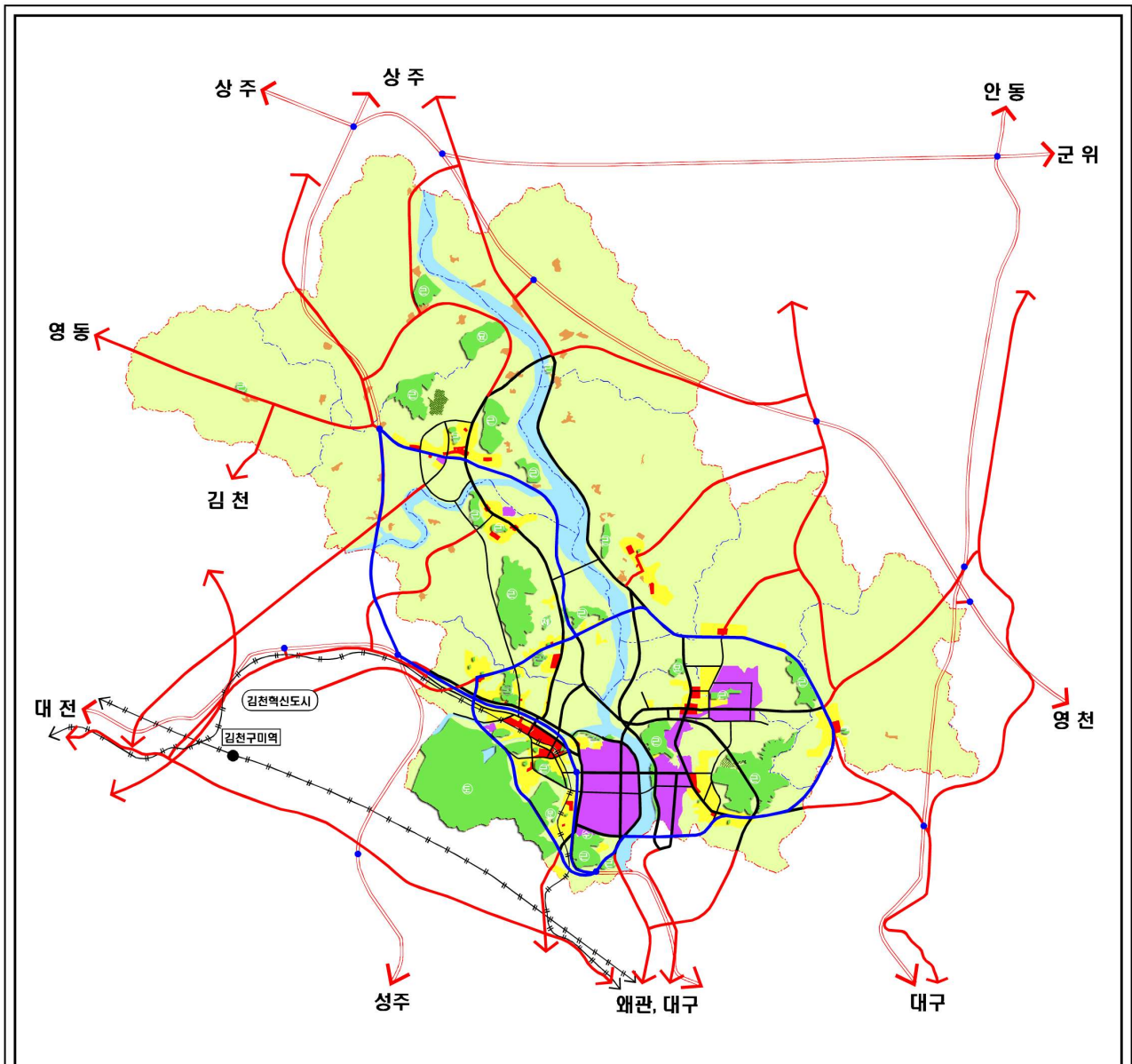
☐ 공원·녹지계획(변경)

- 문화공원(새마을운동 테마공원) 1개소 신설
 - 위 치 :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
 - 면 적 : 0.245km²
 - 목 적 :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조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 기반 강화,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 선린관계를 구축하여 구미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<공원계획 지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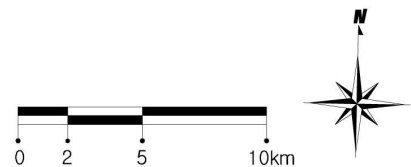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3	2010	2015	2020	비 고
인구(인)	360,221	450,000	500,000	550,000	
공원 면적률(%)	2.27	3.57	4.00	4.33	근린공원 기준
1인당 공원면적(m ²)	38.86	48.91	49.34	48.49	근린공원 기준
근린공원(개소)	28	33	36	39	
어린이공원(개소)	144	155	160	173	
묘지공원(개소)	1	2	2	2	
체육공원(개소)	—	1	1	1	
수변공원(개소)	1	1	1	1	
문화공원(개소)	—	—	1	1	상모·사곡동 일원 신설(0.245km ²)
유원지(개소)	—	1	1	2	

<공원·녹지 계획(변경)도>



범 례					
	주 거 용 지		묘 지 공 원		순 환 도 로
	상 업 용 지		체 육 공 원		지 역 간 도 로
	공 업 용 지		수 변 공 원		주 간 선 도 로
	보 전 용 지		문 화 공 원		보 조 간 선 도 로
	관 리 용 지		유 원 지		철 도
	도 립 공 원		I · C 및 J · C		
	근 름 공 원		고 속 도 로		

공원·녹지체계 기본구상도



《참 고 사 항》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 제21조 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

1-5-3-2. 다음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할 수 있다.

- (5) 시·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·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할 수 있다.

- ② 10만㎡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(확장을 포함한다)하거나 2만㎡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(축소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

☞ 신설되는 공원면적은 10만㎡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할 수 있음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법 제15조 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

-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
2. 주제공원 :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

나. 문화공원 :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